

2006. 9.
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8회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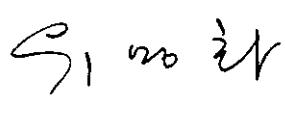
불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발의자 : 양순경 의원 (서명  날인 

외 2인

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안발의서명서

| 의원성명 | 서명 또는 날인 | 비고 |
|------|---|----|
| 양운경 |  | |
| 김영선 |  | |
| 김기수 |  | |
| | | |
| | | |

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1098 |
|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06. 9.
발 의 자 : 양순경 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2006.4.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에 의거 현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관련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7조(특별위원회)
 - “징계와 자격” 을 “윤리심사 또는 징계”로 하고,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2

- 붙임 1.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3.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 1부. 끝.

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중 “징계와 자격” 을 “윤리심사 또는 징계”로 하고,
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 를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7조(특별위원회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의회는 의원의 <u>징계와자격</u>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④ (생략)</p> | <p>제7조(특별위원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윤리심사 또는 징계 윤리특별위원회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
제34조의3 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0조의2 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